

가. 입소 관리

□ 입소 대상자: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(가정폭력 피해 뿐 아니라 스토킹, 교제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자 포함)

○ 일반 보호시설

-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-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- 지적장애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※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특히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

○ 가족보호시설

- (1순위)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
- (2순위)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
- (3순위) 가정폭력피해자
 - ※ 가족보호시설은 되도록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

○ 장애인은 입소율 계산시 입소인원을 1.5인으로 산정(장애인 보호시설 미적용)

※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나. 퇴소 관리

□ 퇴소 사유

-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 만료
-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
- 타 입소자 및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(예시: 자해, 폭력, 음주과다, 무단외박 반복 등)
 - ※ 장애인 입소자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 시 지속적인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시·군·구에 장애인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, 요청을 받은 시·군·구 보호시설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